

韓國圖書館史研究抄 (七)



朴熙永

第四節 實錄

- 1) 春秋館
- 2) 春秋館의 實錄閣
- 3) 實館
- 4) 史庫

第五節 佛典

第四節 實錄

1) 春秋館

春秋館은 實錄을 編纂하는 官署이다. 春秋館에서는 當代 實錄의 編纂以外에도 高麗史와 같은 正史라고 할 수 있는 史書도 아울러 編纂하였고 實錄以外에도 많은 歷史書籍을 編纂하였던 것이다. 春秋館에는 史官들이 있어 每日 時政記와 史草를 記錄하였는데 史官들의 史草는 所謂 朝鮮王朝實錄(李朝實錄)이라는 歷代王의 實錄編纂의 資料가 되었던 것이다.

春秋館은 太祖元年(1392) 7月 李太祖가 建國과 同時に 官制를 制定할 때에는 高麗를 模倣하여 藝文春秋館이라고 하였는데 얼마 안가서 藝文館과 春秋館의 두 官署로 分離되었는데 建國初에는 藝文館과 春秋館을 合친 官署이었다. 藝文春秋館의 官員은

- | | |
|-----|--------------|
| 監館事 | 一員 (侍中以上이 兼) |
| 大學士 | 二員 |
| 知館事 | 二員 (資憲以上이 兼) |
| 學士 | 二員 |

次

第六節 圖書撰修 및 刊行

第七節 外國との 關係

1) 明

2) 日本, 對馬島

第八節 世宗의 書籍蒐集 및 愛護

第九節 正音

同知館事	二員 (嘉善以上이 兼)
------	--------------

編修官	二員
-----	----

應敎	一員
----	----

供奉官	二員
-----	----

修撰官	二員
-----	----

直館	四員
----	----

이 있었다.

(2)

藝文春秋館은 얼마 안되어서 藝文館과 春秋館의 두 機關으로 分離하게 되어 각각 獨立된 官署로서 設置 運營하게 되었다. 春秋館이 藝文春秋館에서 分離된 年代는 알 수 없으나 太宗 14年(1414) 5月 10日에 領春秋館事 河器으로 하여금 高麗史를 矢定케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太宗 14年 以前에 春秋館으로 獨立된 것을 알 수 있다. 春秋館으로 獨立하였을 때의 官員은

領事	一員 (領議政이 兼)
----	-------------

監事	二員 (左右議政이 兼)
----	--------------

知事	二員 (他官이 兼)
----	------------

同知事	二員 (他官이 兼)
-----	------------

修撰官	七員 (副提學, 六承旨外 兼)
-----	------------------

編修官	(堂下 三, 四品)
-----	------------

記注官	(五品)
記事官	(六品以下)
이 있었다.	④

- ① 太祖實錄 卷1 太祖元年 7月丁未條
- ② 增補文獻備考 卷221 職官考8 藝文館條
- ③ 太祖實錄 卷27 太宗 14年 5月壬午條
- ④ 增補文獻備考 卷221 職官考8 春秋館條

2) 春秋館의 實錄閣

世宗 27年(1445) 11月 21日에 春秋館에 서太祖實錄 15卷, 恭靖王實錄(定宗) 6卷, 太宗實錄 36卷을 각각 4本을 書하여서 1本을 本館(春秋館)에 있는 實錄閣에 藏하고 나머지 3本은 忠州, 全州, 星州의 三史庫에 分藏하였다고 하는바 春秋館에 保管하는 實錄은 春秋館에 있는 實錄閣에 保管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春秋館의 實錄閣이 언제 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如何間 太祖實錄이 이루어진 太宗 13年(1413) 3月 22日以後에 設置된 것이라고 推測할수 있다. 實錄閣은 純全히 實錄만을 保藏하는 곳으로 設置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① 世宗實錄 卷110 世宗 27年 11月庚寅條
- ② 太宗實錄 卷25 太宗 13年 3月 辛丑條

3) 實 錄

太祖로 부터 世宗까지 사이의 歷代王은 四代로서 太祖, 定宗, 太宗, 世宗의 順이다. 實錄은 王이 王位로 부터 물려 나간 後에야 編纂하는 것이어서 本 第一期사이에 이루어 진 實錄은 太祖, 定宗, 太宗의 三代朝의 實錄이 이루어졌다.

太祖實錄은 15卷으로서 太宗 13年(1413) 3月 22日에 이루어 졌는데 河儲이 命을 받어 編撰하였다.

定宗實錄은 6卷으로서 世宗 8年(1426) 8月 15日에 이루어 졌는데 春秋館에서 이를 ② 撰하였다.

太宗實錄은 36卷으로서 世宗 13年(1431) 3月 17日에 이루어 졌는데 春秋館에서 이를 ③ 撰하였다.

太祖, 定宗, 太宗의 三代王實錄이 完成하였을 때에는 各一部만이, 撰進되어 春秋館에 收藏하고 있어서 萬一의 事態를 考하여 世宗 27年(1445) 11月 21日 春秋館의 上啓에 依하여 副本三部를 더 復寫하여 이것들을 忠州, 全州, 星州의 三史庫에 각각 分藏하여서 實錄의 散逸을 未然에 防止하였다 것이다.

- ① 太宗實錄 卷25 太宗 13年 3月辛丑條
- ② 世宗實錄 卷33 世宗 8年 8月丙子條
- ③ 世宗實錄 卷51 世宗 13年 3月辛巳條
- ④ 世宗實錄 卷110 世宗 27年 11月庚寅條

4) 史 庫

史庫라고 稱하는 史冊만을 保藏하는 建物이 있었는데 元來는 宮內에 있었던 것이다. 定宗 2年(1400) 12月 22日 時昌宮에 火災가 있었을때 入直의 史官 蘆異가 史庫의 門을 열고 史冊을 꺼냈다는 記錄이 있는바 이 記錄으로 史庫가 宮內에 있었다는 것과 아울러 命없이는 史庫를 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史庫는 時昌宮에 있다가 時昌宮이 火災가 있었으므로 中樞院으로 옮겼는데 中樞院이 司膳의 廚이 가까워 火災의 念慮가 있어 太宗 2年(1402) 6月 11日 尚衣院(尚衣院은 王의 衣冠와 內府의 財貨 金寶等을 掌하는 官署이다)으로 옮겼다가 長生殿으로 옮겼다. 太宗 13年(1413) 5月 21일 ③ 史庫는 長生殿으로 부터 忠勤閣齊宮으로 옮겼다.

宮內에 있는 史庫以外에 外庫로서 먼저 忠州에 史庫를 設置하여 이를 忠州史庫라고 하였는데 忠州史庫가 현재 設置되었는

치는 알 수 없으나 太宗 12年(1412) 4月 3日에 禮曹가 忠州史庫所藏의 太宗頒樂圖를 考할 것을 請하였다라는 記錄이 있는바 이 것으로 미루어 太宗 12年(1412)以前에 忠州史庫가 設置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外庫로서 忠州史庫以外에 全州, 星州에도 史庫가 있었는데 全州, 星州史庫는 世宗 21年(1439) 7月 3日에 建庫하였던 것이다.

× ×

春秋館 史庫에 所藏되어 있는 文書의 曝曬是 世宗 28年(1446) 10月 8日에 定하였는데 이에 보면 科舉式年에 依하여 二年을 隔한 辰, 戌, 丑, 未年에 하기로 하였다.

- ① 定宗實錄 卷6 定宗 2年12月壬子條
- ② 太宗實錄 卷3 太宗 2年 6月癸亥條
- ③ 太宗實錄 卷25 太宗 13年 5月甲辰條
- ④ 太宗實錄 卷23 太宗 12年 4月丁巳條
- ⑤ 世宗實錄 卷8 世宗 21年 7月己酉條
- ⑥ 世宗實錄 卷114 世宗 28年 10月壬寅條

第五節 佛 典

李朝는 高麗에 있어서의 佛教의 弊害를 矯正하기 爲하여 佛教의 公的인 地位를 可能한限 否定 또는 削減하였으나 이것은 主로 政治的인 見地에서 였으며 信仰 方面에서는 王室의 後宮에서 만해도 佛事を 營爲함이 極盛하였고 한편 一般庶民間에도 高麗에서 繼續하는 信者の 數가 많았고 甚至於는 儒學者中에서도 佛教에 關한 깊은 知識과 關心이 있는 者가 적지 않았으니 自然히 佛典의 刊行等도 流行하였던 것이다. 그려므로 一般 佛典의 刊行과 아울러 佛典의 集大成인 大藏經도 여려번 刊行하였는데 大藏經은 日本과 對馬島로 부터 繼續의 으로 이를 求하고자 請하여

왔으며 따라서 여려번 大藏經을 賜하였던 것이다.

太祖 2年(1393) 7月 海印寺 古塔에 大藏經을 印成하여 安置하였고 太祖 2年(1393) 10月 17日 演福寺 五重塔에 大藏經을 安置하였고 또 太宗 13年(1413) 3月 11日 大藏經을 海印寺에서 印刷하여 開慶寺에 置하였는데 以上으로 미루어 佛事와 아울러 佛典을 印刷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 太祖7年(1398) 5月 10日 大藏經板을 移管하는데 王이 龍山江에 幸次하였고 大藏經板은 江華의 禪源寺로부터 支天寺로 輸送하였는데 勤員된 人員은 2000名이라고 하니 이것으로 보아 大藏經이 얼마나 龙大한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더욱 히 現代가 紹는 大正 4年(1915) 3月 15日複印作業이 始作되었는데 50名의 人員으로 8月까지 終렸다고 하니 印刷만도 큰 事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大藏經이 印刷되는 한편에서는 여려 佛典이 刊行되었는데 特히 法華經, 華嚴經, 妙法蓮華經, 父母恩金經, 長壽減罪經 等等의 佛典들은 비록 王과 王后等 王族들의 冥福을 爲하여서 였지만 金寫되었던 것이다. 大藏經도 그려하였지만 日本과 對馬島로부터 法華經, 大般若經, 妙法蓮華經等의 佛典들을 求하려 왔었던 것이다.

日本과 對馬島로 부터 大藏經을 求하려 왔던 事實을 年代順으로 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 太祖 3年(1394) 12月 日本
- 太祖 5年(1396) 3月 日本
- 太祖 7年(1398) 12月 日本
- 定宗 元年(1399) 5月 日本
- 太宗 6年(1406) 2月 日本
- 太宗 7年(1407) 7月 21日 日本

- 一部를 賜하다.
太宗 8年(1408) 5月22日 日本
一部를 賜하다.
太宗 11年(1411)10月21日 日本
一部를 賜하다.
太宗 13年(1413) 3月 2日 對馬島
賜하다.
太宗 13年(1413) 6月11日 日本
一部를 賜하다.
太宗 14年(1414) 6月20日 日本
一部를 賜하다.
太宗 15年(1415) 7月20日 日本
太宗 16年(1416) 8月20日 對馬島
太宗 16年(1416) 8月20日 日本
賜하다.
太宗 17年(1417) 9月30日 日本
世宗 2年(1419) 1月 6日 日本
賜하다.
世宗 2年(1420)12月 8日 日本
世宗 3年(1421)11月16日 日本
世宗 4年(1422)11月13日 日本
世宗 4年(1422)11月16日 日本
賜하다.
世宗 5年(1423)11月17日 日本
世宗 6年(1424) 1月 8日 日本
賜하다.
世宗 7年(1425) 4月12日 日本
世宗 14年(1432) 7月26日 日本
中國板印을 賜하다.
世宗 16年(1434) 3月 5日 對馬島
世宗 22年(1440) 8月 1日 日本
一部를 賜하다.
世宗 25年(1443)11月18日 日本
世宗 27年(1445) 2月 3日 日本
賜하다.
世宗 27年(1445) 3月12日 日本
賜하다.
世宗 27年(1445) 5月14日 對馬島
一部를 賜하다.
世宗 28年(1446) 6月18日 日本
一部를 賜하다.
世宗 30年(1448) 4月27日 日本
一部를 賜하다.
世宗 31年(1449) 8月19日 對馬島
賜하다.
世宗 32年(1450) 1月 6日 日本
一部를 賜하다.
(以上은 朝鮮王朝實錄, 太祖, 定宗, 太宗, 世宗實錄에서 參考하였음)
日本은 印刷된 大藏經을 求하여 가더니
世宗 5年(1423) 12月 25일 大藏經의 原板
木을 請求하게 되었는데⁽⁵⁾ 原板木은 一本뿐
임으로 뜻주겠다고 한즉 使者가 絶食까지
하여 가면서 달라고 하여 結局 大藏經板
木 代身으로 密敎大藏經板, 訂華嚴經板과
印刷한 大藏經을 賜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日本과 對馬島가 佛典을 求한
事實을 추려 본다면 아래와 같다.
太宗 12年(1412) 5月28日
對馬島 法華經을 求하다.
太宗 14年(1414) 7月11日
日本 (大般若經을 賜하다)
太宗 14年(1414) 7月22日
日本 大般若經을 求하다.
太宗 15年(1415)12月13日
日本 大般若經을 求하다.
太宗 16年(1416) 5月 8日
對馬島 般若經을 求하다.
太宗 16年(1416)10月27日
對馬島 大般若經을 求하다.
世宗 5年(1423)11月17日
日本 大般若經을 求하다.
世宗 6年(1424) 1月19日
日本 (大般若經을 賜하다).
世宗 9年(1427) 1月13日
日本 般若經을 求하다.

世宗 10年(1428) 3月 1日
日本 大般若經을 求하다.
世宗 10年(1428) 7月 10日
日本 大般若經을 求하다.
世宗 10年(1428) 8月 14日
對馬島 (大般若經을 賦하다)
世宗 10年(1428) 8月 26日
日本 大般若經을 求하다.
世宗 11年(1429) 6月 18日
日本 大般若經을 求하다.
世宗 11年(1429) 7月 30日
日本 (大般若經을 求하다)
世宗 17年(1435) 2月 6日
對馬島 (大般若經을 賦하다)
世宗 19年(1437) 2月 15日
對馬島 大般若經을 求하다.
世宗 19年(1437) 3月 31日
對馬島 (妙法蓮華等經을 賦하다)
世宗 23年(1441) 1月 15日
對馬島 (法華經을 賦하다)
世宗 26年(1444) 1月 10日
日本 (大般若經을 賦하다)

(以上은 朝鮮王朝實錄 太宗, 世宗實錄
에서 參考하였음)

以上인바 日本이 大藏經을 求한 事實
은 60年間 29番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거의 平均 2年에 한번씩 달라고 하였던
것이며 15部를 求하여 간 것이된다.

- ① 朝鮮佛教通史 上編
- ② 太祖實錄 卷 4 太祖 2年 10月己丑條
- ③ 太宗實錄 卷25 太宗13年 3月庚寅條
- ④ 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 5月丙辰條
- ⑤ 世宗實錄 卷22 世宗 5年 12月壬申條

第六節 圖書撰修 및 刊行

太祖로 부터 世宗까지의 60年間은 李朝
500年間에서 極히 짧았던 때임에도 不拘

하고 가장 文化가 發展하였던 時期이다.
그러므로 많은 圖書가 編纂되고 著述되고
刊行되었다. 急進的인 印刷術의 改良 發
達의 影響도 있었지만 特記할수 있는 時
期라고 하겠다. 이 時期에 撰進刊行된 圖
書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太祖 3年(1394) 東國歷代諸賢秘錄撮要를
撰進
" 鶴林府 三國史記를 重刊
" 鄭道傳 朝鮮經國典을 撰
進
太祖 4年(1395) 鄭道傳等 高麗史를 撰進
" " 經濟文鑑을 撰進
" 鄭渾等 貞觀政要의 校正
을 受命
太祖 7年(1398) 趙浚等 四書切要를 撰進
定宗元年(1399) 鄭蘋濟生集成方 이록
經濟六典을 頒布
太宗 2年(1402) 河峴等 編年으로 三國史
의 撰을 命
" 李菴 新圖를 製
" 河峴 朝鮮盛德歌十二章
을 進
太宗 3年(1403) 朱子公家禮 150部를 頒賜
河峴 新修東國史路을 進
太宗 6年(1406) 李崇仁의 遺藁 陶隱集의
印刷를 命
太宗 13年(1413) 經濟六典元集, 繢集을 印
刷 頒行
太宗 15年(1415) 鍼灸銅人圖를 刊行 頒布
太宗 16年(1416) 河峴의 東國史路을 印刷
頒布
世宗 3年(1421) 柳觀 卞季良 雜校高麗史
를 進
" 資治通鑑을 印刷
世宗 5年(1423) 老乞大, 朴通事, 前後漢
直解, 孝經을 印刷
" 通鑑續編을 印刷分賜

世宗 6年(1424)	宋播芳을 印刷分賜	"	楔循에 忠臣圖의 摸錄을 命
"	大全大學을 印刷分賜	"	孟恩誠等 新撰八道地理 志을 進
世宗 7年(1425)	史記을 印刷分賜	世宗14年(1432)	孟恩誠等 新撰八道地理 志을 進
世宗 8年(1426)	朴瓈 樂書를 撰	"	楔循 新撰三綱行實을 進
世宗 9年(1427)	慶尙監司 新刊性理大全 을 進	世宗15年(1433)	黃喜等 新撰經濟六典을 進
"	慶尙監司에 大全易, 書, 春秋의 刊行을 命	"	鄉藥集成方을 摸進
"	鄉藥救急方의 印刷 頒布 을 命	"	河敬復等 隱書를 摸進
"	全羅監司에 大全詩, 春 秋, 性理大全의 印刷를 命	"	慶尙監司 新刊宋楊輝算 法을 進 頒賜
世宗10年(1428)	江原監司 四書大全을 刊	世宗16年(1434)	盧重禮에 胎產要錄의 編 을 命
"	慶尙監司 性理大全을 印 進	"	江原道에 讀書法의 刊을 命
世宗10年(1428)	慶尙監司 農書를 印進	世宗18年(1436)	訓義通鑑을 頒賜
"	金墩 西漢以下歷代譜系 圖를 摸進	"	李季甸, 金汝에 綱目通 鑑의 撰을 命
"	楔循에 孝行錄의 增修를 命	世宗19年(1437)	農事直說을 印刷 頒布
世宗11年(1429)	楚辭을 分賜	世宗20年(1438)	謐字蒐輯 이록
"	江原監司 四書大全을 印 進	"	韓柳文註釋을 摸集印刷
"	鄭招等에 農事直說의 摸 을 命	"	新註無冤錄音註 이록
世宗12年(1430)	忠清監司 尚書, 禮書를 印進	世宗21年(1439)	忠清道 詩人玉屑을 刊
"	古文選을 分賜	世宗22年(1440)	開城府에 東國文鑑 銀台 集儀禮 御製太平集의 印進을 命
"	雅樂譜 이록	"	禮曹 繫祭儀註을 摸進
世宗13年(1431)	左傳을 印刷	世宗23年(1441)	禮曹 屬祭儀註을 摸進
"	直指方, 傷寒類書, 醫方 集成을 印刷	"	李淳에 明皇戒鑑의 摸을 命
"	補註銅人經을 印刷分賜	"	直解小學을 印刷 頒賜
"	吏續元六典을 印刷分賜	世宗27年(1445)	鄭麟趾의 治平要覽 이록
"	東人之文, 盛齒集의 印 刷頒布를 命	"	李純之의 諸家曆象集 이 록
		"	金永蒙等의 醫方類聚 이 록
		世宗28年(1446)	金守溫에 釋迦譜의 增修 을 命

世宗29年(1447) 崔恒等 龍飛御天歌를 이
록

首陽大君等에 命 釋譜詳
節을 撰

東國正韻 이록

龍飛御天歌를 頒賜

世宗30年(1448) 統箇胎錄을 頒賜

東國正韻을 頒賜

世宗32年(1450) 東國兵鑑을 刊行

다.

太宗4年(1404) 11月1日

李圭等이 明으로 부터 가져온 古今烈
女傳500部를 獻하다.

太宗13年(1413) 3月27日

陳遵을 明에 보내 三國誌, 蘇子古史
를求하여 오게 하다.

太宗15年(1415) 10月23日

吳眞이 明으로 부터 銅人圖를 가져오
다.

太宗17年(1417) 12月20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使臣이 神僧傳,
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 冊曆을 가져오
다.

太宗18年(1418) 4月15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使臣이 醫書를
마치다.

世宗元年(1419) 12月7日

敬寧君禪, 鄭易等이 明으로 부터 皇帝
御製序新修性理大全, 四書五經大全
及其他를 가져오다.

世宗7年(1425) 12月23日

明의 使臣에게 莎麻布를 주고 集成小
學一百件을 사도록 하다.

世宗8年(1426) 11月24日

金時遇가 明으로 부터 五經, 四書 및
性理大全一部 120冊 通鑑綱目 14冊을
가져오다.

世宗13年(1431) 9月2日

明使 般若心經, 金剛經, 阿彌陀經,
觀音經을 마친다.

世宗16年(1434) 5月25日

明으로 부터 보내온 陰陽書 441件을
各司及 群臣에게 名稱歌曲 135件을
禪教兩宗에 下賜하다.

世宗17年(1435) 7月7日

沈道源等이 明으로 부터 胡三省音註
資治通鑑 一部를 가져오다.

第七節 外國과의 關係

1) 明

圖書를 中心으로 한 明과의 關係는 李朝의 燦爛한 文化를 자랑하던 이 時代인
만큼 李朝로 부터 謝恩使 또는 進賀使等
으로 使臣이 明으로 갔으며 이들이 되돌
아울때에는 高麗時代와 같이 圖書를 가져
왔으며 또한 明으로부터 오는 使臣들도 역
시 우리 나라가 圖書를 좋아함을 알고 圖
書를 購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李朝는 明에 對한 貢物로 物件들을 가져 갔음에
반하여 李朝은 明으로 부터 明의 皇帝가
보내는 圖書, 또는 使臣 스스로가 求하여
오던가 特히 指名한 圖書를 가져 왔던 것
이다. 여기 明으로 부터 드려온 圖書들을
추려 본다면 大略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太宗3年(1403) 9月13日

成石璘等이 明으로 부터 가져온 通鑑
綱目, 十八史略等을 進하다.

太宗3年(1403) 10月27日

明使 黃儼이 元史, 十八史略, 山堂考
索, 諸臣奏議, 大學衍義, 春秋會通,
貞西山讀書記, 朱子成書 各一部을
마친다.

太宗4年(1404) 3月27日

李彬等이 明으로 부터 永樂2年 大統
曆100本, 古今烈女傳 110部를 가져오

世宗17年(1435) 8月24日

南智를 進賀使로 明에 遣하면서 胡三省音註資治通鑑 趙完璧源委, 金履祥通鑑前編, 陳經歷代筆記, 宋史等을 請하게 하다.

世宗17年(1435) 12月21日

南智가 明으로 부터 胡三省音註資治通鑑 一部를 가져오다.
(以上은 朝鮮 王朝實錄 太宗, 世宗實錄에서 參考하였음)

2) 日本, 對馬島

日本 및 對馬島와 李朝와의 圖書를 中心으로 한 關係는 이들이 우리나라로 부터 전너간 佛敎의 隆盛으로 因하여 主로 大藏經과 여러 佛典이 日本으로서는 至極히 必要하였으며 또한 當時 發達한 우리나라 圖書도 이들이 求하러 왔던 것이다.

李朝가 日本의 圖書를 求한 것은 極히 드물었는데 世宗10年(1428)7月1일 日本에 百篇尙書가 있다하니 ① 通信使로 하여금 이를 것을 사오도록 命한 일이 있다.

日本과 對馬島가 佛典以外의 一般圖書를 求하러 왔던 事實을 大略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太宗18年(1418)	11月29日	日本
世宗 7年(1425)	10月18日	日本
世宗15年(1433)	6月16日	對馬島
世宗16年(1434)	4月12日	對馬島
世宗17年(1435)	1月14日	對馬島
世宗29年(1447)	5月28日	日本
世宗30年(1448)	7月 5日	日本
世宗31年(1449)	5月 3日	對馬島
世宗32年(1450)	6月30日	日本
世宗32年(1450)	10月 7日	日本

(以上은 朝鮮 王朝實錄 太宗 世宗實錄에서 參考하였음)

① 世宗實錄 卷41 世宗10年7月辛亥條

第八節 世宗의 書籍蒐集 및 愛護

世宗은 22歳에 登極하여 制度 文化 外交 國防等 모든 面에서 뛰어난 政治를 培우았으며 李朝歷代王中 가장 國運을 擴張하고 文化를 發展시켰으며 李朝政治와 文化的基礎를 堅固히 하였다.

世宗은 한글의 創造를 爲始하여 活字印刷術의 改良, 科學, 音樂까지도 그 發展에 크게 貢獻하였으며 特히 印刷術의 改良으로 大量은 圖書를 刊行할 수 있는 亂巴침을 이룩하였다. 더욱이 現在의 學術院과 같은 存在인 集賢殿의 組織 運營은 學問 發展의 要因이 되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要件은 훌륭한 文化事業을 할 수 있는 要件이 되었던 것이다.

世宗은 書籍出版에 重點을 두었으며 그 러기 爲하여 좋은 書籍의 藏集에도 甚히努力하였다. 世宗3年(1421) 3月 26일에는 ① 널리中外로 부터 圖書를 購入하였는데 書籍을 納하는 者는 그가 願하는 바 따라或是 布帛을 紿하거나 또는 官爵을 除하기도 하여 이들을 賞하였다. 世宗 11年(1429) 5月 29일에는 國語, 宋播芳, 資治通鑑源委, 文苑英華, 朱文公集, 周禮東嚴證譏等의 圖書를 各道에 示達하여 이를 求하였다. 이中에는 後에 出版한 것들이 있다. 또 世宗17年(1435) 3月 6일 文臣을 各道에 分遣하여 遣典을 購求케 하였으며 世宗25年(1443) 4月 21일에는 集賢殿으로 하여금 杜詩諸家의 註釋을 參核會粹해서 하나로 하기 爲하여 杜詩諸家註를中外에 購入케 한 以上的 여러 事例는 그一部에 지나지 않으나 世宗이 書籍의 編纂과 良書의 刊行을 爲하여 必要한 書籍를中外에서 購入하여 文運을 發展케 하였던 것을 알수있다.

世宗은 圖書를 出版하여 널리 이를 普及하는 한편 臣下들에게 圖書에 對한 愛護心을 가지게 하기 爲하여도 努力하였다.

中外로 부터 求해온 良書, 貴重圖書들을 莫大한 經費를 消費하면서 이것을 鑄字所로 하여금 印刷케 하고 隨時로 臣下에게 圖書를 下賜하였는데 下賜한 圖書의 保管이 不良하였던 模樣이어서 이를 防止하고 臣下들로 하여금 圖書를 貴히 여기게 하기 爲한 方法으로 世宗22年(1440)8月10日 各品에게 頒賜한 鑄字所에서 印한 書籍을 3個月을 限하여 下賜한 그 書籍을 糊하여 承政院에 내 보이고 거기에 「宣賜」이라는 記錄을 빙도록 特殊한 規程을 定하여 圖書를 貴하게 保存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 ① 世宗實錄 卷11 世宗3年3月戊子條
- ② 世宗實錄 卷44 世宗11年5月甲戌條
- ③ 世宗實錄 卷67 世宗17年3月丁丑條
- ④ 世宗實錄 卷100 世宗25年4月丙午條
- ⑤ 世宗實錄 卷90 世宗22年8月己卯條

第九節 正 音

正音이란 한글이 創制되었을 때의 名稱이다. 한글은 世宗25年(1443)12月에 世宗이 親히 28字를 制定하였는데 訓民正音이라고 이름지어 三年間 集賢殿에서 鄭麟趾, 申叔舟, 成三問, 崔恒等의 當代 가장

優秀한 學者들과 더불어 研究를 거듭하여 世宗28年(1446)9月(이것을 陽曆으로換算하면 10月9일이 되므로 이 날을 한글날이라고 하여 記念한다)訓民正音이라는 이름으로 發布하게 되었다. 正音을 發布한 世宗은 反對하는 臣下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에 努力하여 世宗29年(1447)2月에는 正音으로 龍飛御天歌를 同年7月에는 釋譜詳節을 月印千江이라는 書名으로 刊行하였고 韻書를 東國正韻이라고 하여 刊行하였다. 이러한 一連의 事業은 正音의 研究와 正音으로 謳解하는 事業으로 延長되어 여러가지 繫要한 圖書를 謳解하여 出版하였는데 이러한 事業은 正音廳이 있어서 한글로 이루어지는 圖書를 한글活字로 印刷하였다. 世宗 32年(1450)12月17日 正音廳이 小學의 印刷를 마쳤으므로 그 鑄字를 鑄字所로 돌려 보냈다고 하는바 이것으로도 正音廳이 한글의 研究 普及뿐만이 아니라 印刷까지 하였음을 알수 있다.

- ① 世宗實錄 卷102 世宗25年12月條
- ② 世宗實錄 卷112 世宗28年9月條
- ③ 龍飛御天歌 卷尾 崔恒의 跋
- ④ 月印釋譜 卷首 釋譜詳節 序
- ⑤ 文宗實錄 卷5 文宗即位年12月丁亥條